

건설기술인 행정처분 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한 아래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7월 13일

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

1. 대상자

당사자(건설기술인)		처분내용	처분의 원인사실
성명	주소		
윤*로 (52.**.13.)	세종특별자치시 (이하생략)	업무정지 12개월 (2022.07.26.~2023.07.25.)	건설기술경력증 대여
박*원 (97.**.22.)	충남 논산시 (이하생략)	업무정지 4.5개월 (2022.07.26.~2022.12.10.)	경력 거짓신고
김*관 (80.**.11.)	충남 태안군 (이하생략)	업무정지 4.5개월 (2022.07.26.~2022.12.10.)	경력 거짓신고

2. 법적근거

-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4조 제1항 제1호,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

3. 유의사항

-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. 기 타

-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담당(☎ 042-670-323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